# 한국도로공사 2021년 하반기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 [5급 공채-일반전형, 보훈전형, 융합인재전형]

1. 선발분야 및 인원 ※ 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

		행 7	 첫 즤			;	기 술 직			
구 분	계	90 7	8 7	토	목	전기	기계	설비	전산	전자
		경영	법정	일반	교통	센기	/   /   /	'런 미	건간	선수
일반전형	56	9	4	26	4	2	3	1	5	2
보훈전형	5	2		2					1	
융합인재전형	3	※ 융합역	※ 융합인재 전형은 선발분야 구분 없이 채용하며, 직종은 추후 결정							

#### 2. 채용직급: 인턴사원(채용형)

※ 인턴 신분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기간(3개월 내외, 단 인력운영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)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(5급) 임용

#### 3. 지원자격

구 분	일반전형·보훈전형·융합인재전형							
	□ 학력, 성별, 연령 등 제한 없음 (단, 공사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)							
	□ 병역사항 :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(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)							
	※ 인턴채용일('21.1	2. 6 예정) 이전	전역 예정자 포	하				
기 본	□ 공사 인사규정 7	세8조의 결격사	유가 없는 자	[붙임 1]				
	□ 인턴채용일('21.	l2. 6 예정)로 <sup>-</sup>	부터 근무 가능	자(사업장 전국	소재)			
	□ [보훈전형]「국기	가유공자 등 예	우 및 지원에	관한 법률」등이	네 따른 취업지원			
	대상자로서 증명	서 발급이 가능	5한 자 [붙임 4	1]				
	□ 어학성적(해당점	수 이상 보유)						
	구 분	TOEIC	TEPS	OPIc(영어)	TOEIC Speaking			
	일반지원자	700점	300점	IM2	120점			
어 학	사회형평 대상자	500점	220점	IL	90점			
(택 1)	·사회형평 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기족, 다문화기족							
	*청각장애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) : 듣기부분을 제외하고 TOEIC 250점, TEPS 132점							
	□ 인정기준 : '19. 11. 9 이후 응시하고 '21. 9. 30 까지 발표한 시험성적							
	□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, 국외응시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							
 カカス								
자격증 	등 □ [기술직, 융합인재] 선발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[붙임 2]							
비 고	□ 5급 공채 및 8급	· 공채의 각 전	형 및 선발분이	i 중복 지원 불	-가 			

※ 어학성적, 자격증, 사회형평 대상자 등 모든 자격요건,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('21. 9. 30)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


### 4. 전형별 주요내용

નો સ્ટો નો નો	-프넹	۱ (د (۱ م) حاد
_ 전형단계_	내용	일정(예정)
	□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www.ex.co.kr)	9.16(목) ~
원서접수	- 어학, 역량기술서, 융합인재・기술직 필수자격증[붙임 2],	9.30(목) 15:00
	서류전형 공통자격증, 부가가점[붙임 4],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	A1 1 1 1 1 1
서류전형	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등 기입  ○ 일반전형 : 행정직 50배수, 기술직 30배수 * 동점자 전원 선발 *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 (지원자격 총족 및 역량기술서 적합시 합격) - 필기전형 만점의 10% 가점이 부여되는 고급자격증 [붙임 4] 및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 - 사회형평 대상자 (3. 지원자격상의 사회형평 대상자와 동일)[붙임5] ○ 보훈전형 및 융합인재전형 - 지원자격 충족 및 역량기술서 적합 시 전원 선발  ○ 서류전형 평가방법(일반전형)  ① 어학성적 (70)+②자격증(행정30, 기술50)+③역량기술서(적·부)  ① 어학성적 계산방법(70점) : 본인 TOEIC 환산점수 ÷ 800 × 70 *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800점 이상 시 만점(70점) 처리 * 어학시험 점수 환산표 [붙임 3]  ※ 예시) 지원자 어학성적이 750점인 경우 : 750 ÷ 800 × 70 = 65.63  ② 자격증 계산방법(행정 30점, 기술 50점) ○ [행정직] 공통 자격증(30점) ○ [기술직] 공통 자격증(30점) ○ [기술직] 공통 자격증(30점)  ○ [기술직] 공통 자격증(30점)	A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
	·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   · 전자계산기(제어)산업기사       · 전자계산기기능사         · 빅데이터분석기사       ·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    ·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(구1급)         자격증       · 산업안전기사       · 한국사능력검정 1~2급       · 워드프로세서(구2~3급)         · 건설안전기사       ·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    · 컴퓨터활용능력 2~3급         · 산업안전산업기사       · 건설안전산업기사         단,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수 미인정	
	비고 - 토목(일반) 지원자가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포함)를 보유한 경우 - 정보통신(전산, 전자) 지원자가 정보처리기사(산업기사, 기능사 포함)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(제어)산업기사, 전자계산기기능사를 보유한 경우 ※ 예) 전산 지원자가 정보처리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보유시	
	※ 에) 선산 시원자가 정도저다기자, 자구자동화산업기자 모ㅠ지    ☞ 2등급 20점 부여 (정보처리기사 미인정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인정)	
	◇ 선발분야 필수자격증(기술): 2개 이상 소지자 20점 부여	
	※ 예) 토목(일반) 지원자가 토목(일반) 선발분야 필수자격증인 토목기사, 교통기사, 도시계획기사를 보유한 경우	



전형단계	내 <del>용</del>	일정(예정)
서류전형	□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필기전형 대상자를 우선 결정함 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: 10. 8(금) ~ 10. 12(화) 17:00 ①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: 10. 8(금) ~ 10. 12(화) 17:00 ① 필기전형 대상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생년월일, 성별 등 정보입력 ② 해당자는 우대사항 증빙서류 스캔파일 등록 [붙임4, 5] ※ 본인인증 기간 내 입력한 정보를 통해 어학, 자격증, 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, 본인인증을 미실시 하는 경우 필기전형 응시 불가 ※ 진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인정기준 [붙임4, 5] ①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(등록)한 서류만 인정 ② 채용공고일('21.9.16 포함)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□ 채용절차 진행 중 허위·오기재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으로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처리 등 불이익 처리하므로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시 자격증번호, 생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입 ※ 미기재·오기재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응시자로 간주하며 탈락 처리함 □ 입사지원서 상 입력된 각종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의 증빙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※ 제출한 서류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□ NCS 기반 역량기술서 작성불량자(단순 기호입력 등 불성실 입력, 타기관 지원서 입력, 표절, 블라인드 위반 등)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	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: <b>10.8(금)예정</b>
필기전형	<ul> <li>□ 시험장소 : 서울, 대구 (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 시 선택)</li> <li>※ 단, 응시희망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 일부 지원자는 희망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정될 수 있음</li> <li>※ 특정지역 편중시 시험장소 배정순서 : ①장애인 ②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이 빠른 순</li></ul>	필기시험일: 10. 23(토)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: 10월 말 예정
면접전형 및 인성검사		추후통보
최종합격자 발표	□ 필기전형 점수, 면접전형 점수, 법정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	추후통보



### 5. 채용목표제

구 분	내 <del>용</del>
이전지역인재	□ 대 상 대학까지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 대구·경북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. 다만,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 ※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·제출할 수 있는 자 (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학교 측에 반드시 확인 후 입력) □ 목표비율 각 전형(필기·면접)별 선발 예정인원의 27% □ 방 법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(필기·면접)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'27%'에 미달하는 경우(단,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)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'3점'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(단, 과락자는 제외) ※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5급 공채(일반전형)에 지원한 지원자 중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시에도 채용목표제를 적용함
양성평등	□ 목표비율 각 전형(필기·면접)별 선발 예정인원의 25% □ 방 법 특정 성별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(필기·면접) 선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'25%'에 미달하는 경우(단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)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'-3점'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(단, 과락자는 제외)
국민기초 생활수급자	□ 목표비율 각 전형(필기·면접)별 선발 예정인원의 2% □ 방 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(필기·면접) 선발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'2%'에 미달하는 경우(단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)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'-3점'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(단, 과락자는 제외)

#### 6. 합격자 근무조건

o 보수수준 : 255만원 수준/월 (단, 5급 임용 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)

o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
o 복지후생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 등

7. 근무장소 :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(본사 및 전국 소재 기관)



### 8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상기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및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전형별, 선발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융합인재전형은 선발분야 구분 없이 선발하며, 최종합격자의 자격, 입사성적, 학력(전공, 이수과목 등) 등 역량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,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, 지원서 입력착오 (미기재, 오기재, 공유로 인한 표절 등)로 인한 불이익(불합격 등)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 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ul> <li>* 어학성적, 자격증, 사회형평 대상자 등 모든 자격요건,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('21.9.30) 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</li> <li>* 진위확인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('21.9.16 포함)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</li> </ul>
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 어학, 자격증, 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처리 하며,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응시자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합격커트라인 및 본인 점수 공개가 불가하니 입사지원서 등정보기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) ※ 시스템상 제출버튼 클릭 시 저장 및 자동제출 되며, 별도 최종제출 버튼 없음(접수기간 내 수정 가능)
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·변조,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,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이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 부적격(탈락)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,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.



## 안전하고 <mark>편리한 불자 이 이 이 대교통 플랫폼 기업</mark>

- □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.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사전배제, 합격 취소, 재응시 자격 제한,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□ 전형별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(과락, 인성검사 불합격 등)하는 경우 합격배수,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□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.
- □ 코로나-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한 안정적인 채용절차 운영을 위해 면접의 경우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.
- □ 전형별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전형단계별 합격자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- · (접수방법) 최종합격자 발표 안내시 공지(예정)
  - ·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    -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   - 응시자, 시험출제자,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    -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    - ※ 평가기준,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

#### 9. 코로나-19 관련 안내사항

- □ 코로나-19에 대비하여 필기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- □ 시험장 입구에서 ① 발열검사, ② 손소독 시행, ③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합니다.
- □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  -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
  - ②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
  - ③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  - ④ 마스크 미 착용자
  - ※ 발열(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시 37.5℃ 이상인 경우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10. 문 의 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☎ 1588-250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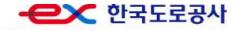
붙 임: 1. 채용결격사유(공사 인사규정 제8조) 1부

- 2. 필수 자격증 기준 1부
- 3. 서류전형 어학시험 점수 환산표 1부
- 4. 부가점수 기준 1부
- 5. 부가점수 및 우대사항 증빙 방법 및 유의사항 1부
- 6. 필기시험 출제 범위 1부
- 7.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부. 끝.

##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

제8조 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8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- 9.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
- 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

## 필수 자격증 기준

□ 기술직, 융합인재 필수자격증 - 선발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증(1개 이상)

구 분	기사 자격증	기술사 자격증
토목(일반)	교통기사, 토목기사, 건설재료시험기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, 건설안전기사, 도시계획기사, 대기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, 소음진동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콘크리트기사, 토양환경기사	교통기술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도시계획기술사, 소음진동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, 토양환경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토질및기초기술사, 도로및공항기술사, 수질관리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,
토목(교통)	교통기사, 토목기사, 도시계획기사	대기관리기술사, 토목품질시험기술사, 자연환경관리기술사
전 기	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	전기응용기술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
기계 / 설비	일반기계기사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검사기사, 건설기계정비기사, 소방설비기사(기계), 건설기계기사(건설기계설비기사), 건축설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수질환경기사, 기계설계기사, 메카트로닉스기사, 대기환경기사	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소방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대기관리기술사, 수질관리기술사, 기계기술사(기계제작기술사)
전산 / 전자	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기사, 전파전자통신기사 (전파통신·전파전자기사 포함), 정보통신기사, 무선설비기사, 방송통신기사, 정보보안기사	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(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),
융합인재	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기사, 전파전자통신기사 (전파통신·전파전자기사 포함), 정보통신기사, 무선설비기사, 방송통신기사, 정보보안기사, 빅데이터분석기사	(전자계산기조식등용기술사), 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산업계측제어기술사, 전자응용기술사



## 서류전형 어학시험 점수 환산표

□ 어학시험별 만점(70점 획득) 기준 환산표

구 분	TOEIC	TEPS TOEIC Speaking		OPIC(영어)
만점기준	800점	348점	140점	IM3

□ 토익 800점 미만 어학성적 환산표

TEPS	TOEIC	TEPS	TOEIC	TEPS	TOEIC	TOEIC Speaking	TOEIC
344~347	795	328~329	760	310~311	725	130	773.5
342~343	790	325~327	755	308~309	720	120	703.5
340~341	785	322~324	750	306~307	715		
336~339	780	320~321	745	304~305	710	OPIc (영어)	TOEIC
334~335	775	317~319	740	302~303	705	IM2	765.8
332~333	770	315~316	735	300~301	700		
330~331	765	312~314	730				

## 부가점수 기준

### □ 법정 가점

	구 분	부가점수	비고	
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			
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	각 전형별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	
취업지원	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			
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	만점의 5~ / 10~		
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	5% / 10%		
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			

#### □ 선택 가점

	구 분	부가점수	비고
재직직원	2년 이상 한국도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(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하여 적용)	필기시험 만점의 5%	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공사 체험형 청년인턴		필기시험 만점의 2%	0 가장 유리한 선택가점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하나만 적용함

### □ 자격증 가점

	구 분	부가점수
	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필기시험 만점의 3%
7 F	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전자계산기(제어)산업기사,	"
공 통	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검정 1·2급	" 270
	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(구1급), 컴퓨터활용능력 2급	" 1.5%
	워드프로세서 2급, 컴퓨터활용능력 3급	" 1%
행 정	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	" 10%
기 술	해당 직종 기술사(필수자격 기준 자격증)	" 10%
	해당 직종 기사(필수자격 기준 자격증)	<i>"</i> 3%

- ※ 가점계산 방법: 법정 가점 + 선택 가점 + 자격증 가점
- ※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%(10점) 초과불가
- ※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
- 융합인재전형은 '공통, 행정, 기술'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



## 부가점수 및 우대사항 증빙 방법

구 분	대 상	우대사항	증빙 방법
법정 가점	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별 만점의 5%/10%	<ul> <li>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보훈번호, 가점비율 등 입력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/ul>
선택 가점	재직직원	필기시험 만점의 5%	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
	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	필기시험 만점의 2%	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
	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<ul> <li>※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li>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</li> </ul>
	공통	필기시험 만점의 1%~3%	
자격증 가점	행정	필기시험 만점의 10%	① 입사지원 시 자격증명, 자격번호 등 입력 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 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
	기술	필기시험 만점의 3%/10%	
서류 전형 우대 사항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서류전형면제, 채용목표제	<ul> <li>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li>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스캔본 첨부</li> </ul>
	북한이탈주민	서류전형 면제	<ul> <li>**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li>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스캔본 첨부</li> </ul>
	한부모가족	서류전형 면제	<ul> <li>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li>한부모가족증명서 스캔본 첨부</li> </ul>
	다문화가족	서류전형 면제	<ul> <li>※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</li> <li>①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선택</li> <li>② 필기전형 대상자 본인인증 실시</li> <li>- 출생년도, 성별정보 수집</li> <li>- 1)~4) 각 1부 등 입증서류 스캔본 첨부</li> <li>1)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2)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</li> <li>3)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(상세)</li> <li>(귀화허가를 받은 자, 前 국적 표시)</li> <li>4)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결혼이민자)</li> </ul>

※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



### 부가점수 및 우대사항 증빙 관련 유의사항

사회형평	대삿자	유의	사항
717700	~II O / II	11 - 1	´ 'I O

- o 취업지원대상자
  -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보훈번호·가점비율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
- o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  - 입사지원 내용 및 본인인증 기간에 기재한 정보와 본인인증 기간에 시스템에 첨부한 해당 증명서(확인서)로 진위여부 확인
  - 해당 증명서(확인서)는 반드시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, 공고일(2021. 9. 16. 포함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유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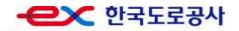
□ 공통 지원자격(어학 및 자격증) 관련 유의사학		공통	지원지	-격(어학	및	자격증)	관련	유의사	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	-----	-------	---	------	----	-----	---

- o 입사지원 및 본인인증 기간에 작성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 하므로 자격번호, 자격증명, 생년월일, 성별정보 등의 정보입력에 유의
- □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정보만으로 진행하여 필기전형 대상자를 결정하며, 입사지원서 작성 및 본인인증 시 허위기재·오기재 등으로 인한 서류전형 및 이후 채용전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□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.

### 안전하고 편리한 변수》 (기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

### □ 제출서류 출력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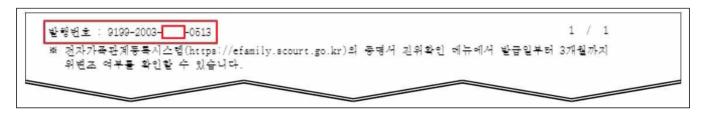
구 분			출력경	령로(정년	부24 : www	w.gov.kr)	1	
		장애인증명서	발급					
	-1 .11 A1	신정방법	인터넷, 방문, 우편		처리기간	즉시(근무시간 내 3시	IZb	
	장애인 증명서	수수료	수수료 없음		신청서	DISABILITY) (장애인복 호)	HCATE OF PERSON WITH 차지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9 리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	
		구비서류	없음 (하단참조)		신청자격	본인 또는 대리인(온	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	
	ユロララ	국민기초생활수	급자 증명서 발급					
	국민기초	신청방법	인터넷, 방문, 우편		처리기간	즉시(근무시간 내 3시	lZb	
な	생활수급자	수수료	수수료 없음		신정서	없음 신청작성에서		
	증명서	구비서류			신청자격	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(제3자)		
		한부모가족 증명	명서 발급					
_	1 4 - 1 7	신청방법	인터넷 방문, FAX, 우	쩐 무인발급기	처리기간	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		
한부모가족 증명서		수수료	수수료 없음		신정서	법 시행규칙 : 별지서	·급신청서 (한부모가족지원 (석 1호의 ) 리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	
		구비서류		신청자격	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(제3자)			
		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						
북한이탈 주민등록		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		처리기간	즉시(근무시간 내 3시	[간)		
		수수료	수수료 없음		신청서	북한이탈주민등록확 산청작성예시	인 신청서	
	확인서	구비서류	있음 (하단참초)		신청자격	본인 또는 대리인(온	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	
	741	발급서류	발급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: 별지서식 1호의 2)					
		외국인등록사실	실증명					
다 문 화 가 족		신청방법	인터넷, 방문		처리기간	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	<u>P</u> )	
	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	수수료	1통 2,000원, 인터넷 무료	Ē	신청서	별지서식 138호의 2)	정서 ( <b>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:</b>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	
		구비서류	있음 (하단참조)		신청자격	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	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	
	가족관계 증명서		E(전자가족	·관계등	록시스템 : ϵ	efamily.sc	court.go.kr	
	혼인관계 증명서	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	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		인터넷신고	민원안내	고객센터	
	기본증명서 (상세)	증명서 발급 위	수 가족관계 증명서	↑ 기본 증명서	후인관계 증명서	이양관계 증명서	한 천양자입양편계 증명서	



□ 정부24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: 문서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(16자리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, 확인 불가 시 미인정(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)



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문서 주요확인 부분 : 문서 하단의 발행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발행번호(16자리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, 확인불가 시 미인정(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)



## 필기시험 출제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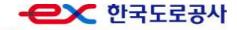
### □ 직업기초능력평가

구 분	출 제 과 목
행정직군	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의사소통능력, 자원관리능력, 조직이해능력
기술직군	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기술능력
융합인재	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기술능력

### □ 직무수행능력평가

구	분	출 제 과 목
행정	행정(경영)	경영학원론, 회계학(중급 회계), 경제학원론
~d`~8	행정(법정)	행정학원론, 정책학, 헌법, 행정법
토목	토목(일반)	도로공학, 응용역학, 철근및P.S콘크리트공학, 토질및기초공학
<b>五</b> 节	토목(교통)	교통공학, 도로공학, 교통계획, 교통안전
전	7]	전력공학, 전기기기, 전기법규, 전기응용
7]	계	열역학, 유체역학, 재료역학, 기계설계
설	비	유체역학, 공기조화, 급배수위생설비, 소방원론
전	산	데이터베이스, 소프트웨어공학, 운영체계, 정보보안, 컴퓨터네트워크
전	자	회로이론, 전자회로, 무선통신, 광통신, 데이터통신
융합	인재	데이터통신, 소프트웨어공학, 정보보안, 경영학원론

※ 공고문에 표기된 시험범위 외의 문의는 받지 않음



##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발췌)

#### 가.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 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#### 나. 이전지역 학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\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②「고등교육법」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- \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 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- \*\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 과학기술원



## 인전하고 <mark>편리한 (도)에 이기 이기 교통 플랫폼 기업</mark>

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 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 - ⑦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 - (사관학교 설치법, 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 - (대전) (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, 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 - @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#### 다. 이전 지역인재

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-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  - ②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  - ☞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 - ②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 - [ 고등교육법] 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 - 印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 - @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 - @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  - ②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 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 - ①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  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  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- \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- <미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  -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  - ㅇ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미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- 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  -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며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미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  ※ 다만, 미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미전지역 인재에 해당
   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  - ㅇ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미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미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 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무>
  - ㅇ 미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며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미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  ※ 다만, 미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미전지역 인재에 해당
   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  - ㅇ 미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o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- 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무>
  - ㅇ 미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  - ㅇ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미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- ※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[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] 등 관계법령 참고

